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6월 2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2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서의 지침으로 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치과주치의사업에 일정금액을 지원함(안 제4조 및 제5조)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진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주치의료 등을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음(안 제6조 및 제7조)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치아우식증 등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며 치과주의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대상은 매년 사업계획서에 의하고 지원액은 예산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진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치과주치의료비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신청시 즉시 환수토록 하였음.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강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6개구가 시범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5월 4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은 관내 15개소 지역아동센터 초·중·고생 390명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총 1,584만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139 호 |
|----------|---------|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서의 지침으로 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치과주치의사업에 일정금액을 지원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진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주치의료 등을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음 (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제27조3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총무과와 협의

라. 기 타

○ 입법예고('12.6.14 ~ '12.6.21, 7일간)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검토 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관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액)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관련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1조의3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50조”는 법률 제11002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인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14조”로 본다.

